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(윤건영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826 발의연월일: 2025. 3. 12.

발 의 자 : 윤건영 • 전현희 • 김 윤

박해철 · 정태호 · 한준호

정을호 · 이성윤 · 한병도

민병덕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감사위원은 감사원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인 감사위원회의의 위원으로서 감사정책 및 주요감사계획, 국가의 세입·세출 결산의 확인, 회계관계직원 등에 대한 변상책임 판정, 공무원의 파면 등 징계 요구에 대한 사항 등의 심의·결정에 참여하고 있음.

그런데 감사원 사무총장을 포함한 감사원 소속 직원이 아무런 제한 없이 감사위원으로 임명되는 경우에는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 립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.

이에 감사원 소속 공무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감사위원 임명을 제한함으로써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제고하기 위함(안 제7조의2 신설).

법률 제 호
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결격사유) 감사원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7조의2(결격사유) 감사원 소속
	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3년
	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감사
	위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.